

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
【2022. 11. 16.(수) 10:00】

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(도시관리국)

검 토 보 고

2022년 11월 16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

(기준: 연도말 예치금, 단위: 천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성액 [㉠] |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| 2023년도말 조성액 [㉡] = [㉢] + [㉠] | 증감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|
| | | 수입액 [㉢] | 지출액 [㉣] | 증감액 [㉤] = [㉢] - [㉣] | | |
| 옥외광고발전기금 | 1,932,572 | 276,850 | 682,350 | △405,500 | 1,527,072 | △20.98% |

-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5억 2,707만 2천원으로, 전년도 대비 4억 550만원 (△20.98%)이 감소하였음

2. 기금운용(수입·지출)계획

(단위: 천원)

| 기금명 | 수입 | | 지출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항목 | 금액 | 항목 | 금액 |
| 옥외광고 발전기금 (121쪽) | 합계 | 2,209,422 | 합계 | 2,209,422 |
| | · 예치금회수 · 이자수입 · 기타수입 | 1,932,572 36,899 239,951 | · 비용자성사업비 · 예치금 · 기타지출 | 681,778 1,527,072 572 |

○ 본 기금 재원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 등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2억 942만 2천원임.

-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3,257만 2천원, 이자수입 3,689만 9천원, 기타 수입 2억 3,995만 1천원을 계상함
-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(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, 옥외 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,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) 6억 8,177만 8천원, 예치금 15억 2,707만 2천원, 기타지출(보조사업 반환) 57만 2천원을 운용할 계획임

3. 검토 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·의결을 얻고자 함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·운용하고 있음
- 2023년도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,
 -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감액
 -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에 2,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-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¹⁾을 보면 기금 주 수입(조성액)인 이자 수입과 기타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집행액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,
-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,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, 목적사업이 적절히 편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1)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참조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**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3.20., 2019.5.10.)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19.3.20, 2019.5.10.)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

이라 한다)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(개정 2019.5.10.)

2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3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4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삭제 (2019.5.10.)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(개정 2019.3.20.)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 (개정 2019.3.20.)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(개정 2019.3.20.)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신설 2019.3.20, 개정 2019.5.10.)
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(개정 2019.5.10.)
6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(개정 2019.5.10.)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. (개정 2019.3.20, 2019.5.10.)

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(개정 2019.3.20.)

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(개정 2019.5.10.)

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 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3.20.)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3.20.)
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(개정 2019.3.20.)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9.3.20, 2019.5.10.)